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국제개발협력센터(ODA팀, 동북아경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I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 제공되며, 반년간 『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院長 蔡 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인쇄일 2009년 9월 21일
발행일 2009년 9월 25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삼일기획: 02) 503-480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154-0 94320

978-89-322-2112-0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러 양국은 경제 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제적·절차적 발동 요건에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9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3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13
2. 2008년도 대한민국 무역구제 동향	16

제3장 러시아의 반덤핑규범 개관	19
1. 법원(法源)	19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20
가. 반덤핑조치의 실제적 조건	20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28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47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47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49
가. 러시아의 FTA	49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50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54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54
2. 정책적 시사점	55
가. 한·러 BEPA 체결	55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58

제6장 결론	60

참고문헌	62
------	----

부 록	64
-----	----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64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66

Executive Summary	69
-------------------	----

표 차례

표 2-1. 2008년 한국 상품무역에서 러시아의 순위	14
표 2-2.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15
표 2-3.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품목	15
표 2-4. 2008년 국가별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	16
표 2-5.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	17
표 3-1. 러시아 반덤핑규범과 WTO 반덤핑협정 비교	46
표 5-1. 한·러 BEPA 일지	56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의 대러시아 상품무역 동향	14
그림 3-1. 러시아의 반덤핑 절차도	29
그림 3-2. 러시아의 사법제도	44

제1장

서론

무역구제조치는 정부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때 수입국이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조치를 말한다. 공정한 무역거래에 대하여 발동되는 세이프가드와 달리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조치는 특정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나타날 때 취할 수 있다. 즉 반덤핑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생산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한 결과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적용되는 조치이고, 상계관세는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수출되었을 경우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입힐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기 세 가지 무역구제조치 중 가장 많이 활용된 수단은 반덤핑조치이다. WTO 출범 이후 1995년부터 2008년까지 WTO 회원국이 부과한 반덤핑조치는 총 2,106건, 상계

관세조치는 121건이다. 세이프가드는 89건에 달했다.¹⁾ 또한 무역구제 조치를 발동한 회원국 중 반덤핑조치를 취한 회원국 수가 가장 많았다.²⁾ 2001년 이후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금융·경제 위기 확산에 따라 많은 국가가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한 결과 2008년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2007년에 비해 27%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³⁾

한국의 해외수출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품·서비스무역은 GDP의 약 90%를 차지하여 여전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⁴⁾ 무역상대국의 무역구제조치는 한국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6월 기준으로 WTO 회원국 중에서 반덤핑조사 및 실제 반덤핑조치가 가장 많이 부과된 국가는 중국 1위,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⁵⁾ 따라서 순조로운 해외시장 수출을 위하여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대외무역제도, 특히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 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 규모가

1) 여기서 반덤핑조치와 상계조치는 1995. 1. 1~2008. 6. 30의 기간 중 발동된 조치에 해당하며, 세이프가드는 1995. 3. 29~2008. 11. 12의 기간 중 발동된 조치에 해당한다.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2009. 3. 26 검색); WTO,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2009. 3. 26 검색); WTO, "Statistics on Safeguard Measure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2009. 3. 26 검색) 참고.

2) WTO 자료에 따르면, 반덤핑조치, 세이프가드조치 및 상계조치를 취한 회원국 수는 각각 39개국, 26개국 및 14개국이었다. Ibid.

3)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2009. 3. 30), "WTO Chief Cites 'Significant Slippage' Toward Protectionism Since Late January."

4) Report by the WTO Secretariat(2008. 9. 3), Trade Policy Review: Republic of Korea, WT/TPR/S/204, p. vii.

5)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op cit*.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이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흑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⁶⁾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도 그만큼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⁷⁾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무역구제조치 중 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해왔던 러시아는 현재 반덤핑 관행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우크라이나산 패스너(fastener), 스틸앵글(steel angles), 형강(shapes and sections), 이음매 없는 인발관 및 용접관(seamless and welded pipes), EU산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flat steel products) 등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⁸⁾ 이와 같은 사실은 대러시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러시아의 반덤핑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반덤핑조치를 포함한 대외무역 관련 국내법 채택·개정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⁹⁾ 따라서 러시아의 반덤핑법이 WTO 규범에 일치하도록 제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해당 WTO 규범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반덤핑 협정'이라고 명칭)과

6) 본고의 제2.1장 참고.

7) 본고의 제2.2장 참고.

8) Edward Borovikov *et al.*(2007), *The 2007 Handbook of Trade Enforcement*, p. 97, Global Competition Review Special Report.

9)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은 부록 2 참고.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까지 러시아 반덤핑 관행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러시아 반덤핑 관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간의 교역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다. 제3장은 반덤핑조치의 실제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러시아 반덤핑규범을 분석한다. 제4장은 러시아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RTA)상의 반덤핑조항을 검토하고, 제5장은 기업 실무 및 정책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007년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대세계 상품 수출액은 3,551억 7,500만 달러, 수입액은 2,234억 2,100만 달러이고, 세계 상품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2.6%, 수입 1.6%이다. 대세계 총수출에서는 광산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2.5%로 가장 높으며, 수입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83.1%로 가장 높다. 서비스 수출액은 390억 5,000만 달러, 수입은 578억 500만 달러이며 세계 서비스 교역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수출 1.19%, 수입 1.87%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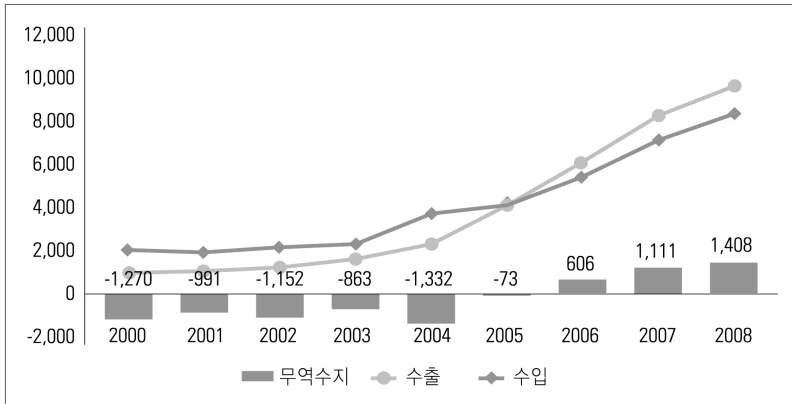
한국과 러시아 간의 상품무역 규모는 2000년 28억 4,600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180억 8,8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은 97억 4,800만 달러, 수입은 8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고

10) WTO, "Trade Statistics,"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RU> (2009. 3. 26 검색).

있다. 무역수지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에서 2006년 6억 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8년에는 흑자액이 14억 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그림 2-1. 한국의 대러시아 상품무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008년을 기준으로 러시아는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독일에 이어 8위를 차지하고, 수입에서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 표 2-1. 2008년 한국 상품무역에서 러시아의 순위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순위	국가	수입액
1	중국	91,389	1	중국	76,930
2	미국	46,377	2	일본	60,956
3	일본	28,252	3	미국	38,365
4	홍콩	19,772	4	사우디아라비아	33,781
5	싱가포르	16,293	5	아랍에미리트연합	19,248
6	대만	11,462	6	호주	18,000
7	독일	10,523	7	독일	14,769
8	러시아	9,748	8	카타르	14,375
9	멕시코	9,090	9	쿠웨이트	12,129
10	인도	8,977	14	러시아	8,34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2-2.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07년		200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949	91.5	5,252	33.0
2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32	186.1	1,318	7.0
3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59	43.5	887	58.7
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724	11.9	760	4.9
5	선박과 수상구조물	622	74.2	216	-65.2
6	철강	76	56.6	132	74.2
7	각종 조제식료품	112	24.6	124	11.1
8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78	13.0	92	18.7
9	고무와 그 제품	55	42.7	90	64.7
10	광물성 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66	1.5	81	23.8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2-3. 한국의 대러시아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07년		200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3,718	136.1	3,995	7.4
2	철강	1,013	62.9	2,203	117.4
3	알루미늄과 그 제품	691	-23.9	754	9.1
4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22	22.1	383	-9.2
5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무기화합물	147	34.6	297	102.1
6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73	-5.8	137	-20.7
7	니켈과 그 제품	240	-31.6	92	-61.8
8	고무와 그 제품	42	6.2	91	115.7
9	목재펄프, 섬유질셀룰로스 재료의 펄프, 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6	16.4	73	-3.5
10	비료	19	-35.4	50	164.8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대러시아 수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2007년 수출이 39억 4,900만 달러, 2008년 수출이 52억 5,200만 달러였고,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의 수출이 2007년 12억 3,200만 달러, 2008년 13억 1,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대러시아 수입은 [표 2-3]과 같이 광물성 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가 가장 많아 2007년 37억 1,800만 달러, 2008년 39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철강제품의 수입이 10억 1,300만 달러, 22억 300만 달러였다. 한국의 수출금액이 큰 품목 또는 수출증가율이 큰 품목에 대하여 무역구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2008년도 대한민국 무역구제 동향¹⁾

200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해외 무역구제는 총 20개국 121건(조사 중 18건 포함)으로 전년대비 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중국·미국 3국이 50.4%를 차지하며,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52.1%로 최대 규제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 중 러시아의 무역구제조치는 셰이프가드 조사 중 3건, 규제 중 3건으로 총 6건, 반덤핑은 조사 중만 1건으로 총 7건을 기록하여 전체 대한민국규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2008년 국가별 대한민국 무역구제 현황

국가	인도	중국	미국	EU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건수	26	21	14	5	7	7	7

주: 2008년 현재 진행중인 무역구제조치 조사, 적용 건수.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2008 수입규제 총람』.

1) 본 절은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2008 수입규제 총람』, 한국무역협회 참고.

표 2-5. 러시아의 대한민국 무역구제 현황

제소품목	조사개시일	진행사항	피소업체	제소형태
평판압연철강제품 (철강)	2008. 3. 21	조사 중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세아제강, 포항강관, 유니온스틸	반덤핑
전구 (기타 비금속)	2004. 9. 1	규제 종료	제일상사(러시아지사)	
철제주방용품 (비금속제공구)	2008. 4. 31	조사 중	모든 한국업체	세이프 가드
수확·탈곡용 콤파인 (보일러·기계류)	2008. 2. 15	조사 중		
스테인리스 강관 (철강)	2007. 12. 13	조사 중		
유리섬유 (화학)	2006. 10. 21	규제 중		
유정용 강관 (철강)	2005. 1. 28	규제 중		
램프 (전기전자제품)	2004. 9. 14	규제 중		
시안화나트륨 (화학)	2005. 10. 27	규제 종료		
대구경관 (철강제품)	2005. 2. 1	규제 종료		
백설탕 (당류·설탕과자)	2004	규제 종료		
사탕 및 카라멜류 (당류·설탕과자)	2002	규제 종료		
강관 (철강)	2000	규제 종료		
설탕 (당류·설탕과자)	1998	규제 종료		

주: 1) 2008년 12월 31일 현재.

2) () 안은 HS 품목표상 대부분류.

3) 백설탕, 사탕 및 카라멜류, 강관, 설탕의 경우 정확한 조사개시일 확인 불가.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철강금속이 전체의 67.8%에 달하며, 석유화학은 중국·인도(70.2%), 철강금속은 미국(31.4%), 섬유류는 인도·터키·우크라이나 3국(57.9%)이 대한민국 수입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 96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4건, 상계관세 1건, 세이프가드 20건으로 반덤핑이 규제의 대부분(79.3%)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세이프가드 발동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국가 유형별로는 미국, EU 등 선진국에 의한 신규 제소는 예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인도·중국·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신흥개도국에 의한 견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무역규제는 2004년 137건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집중적인 세이프가드조치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국가들은 조사 신청 후 실제 조치 적용까지 소요시간이 짧고 규제대상도 포괄적인 세이프가드조치를 선호하여 발동건수는 우크라이나가 2005~07년 중 6건(2007년 4건), 러시아가 2004~08년 중 6건에 달하였다. 2008년 현재 신규로 조사가 신청되어 조사 중인 9개국 18건 중에서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4건, 중국 2건 등으로 이 3국에 의한 규제가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의 대한민국 무역규제는 종료된 구제조치를 포함하면 세이프가드 12건, 반덤핑 2건, 총 14건이고 2008년 현재 조치 중 3건, 조사 중 4건으로 총 7건이다. 러시아는 2004년 이후 전구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발동하였고 백설탕, 램프, 유정용 강관, 대구경관, 시안화나트륨, 유리섬유 등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또한 철제주방용품, 수확·탈곡용 콤팩트,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 중이며 평판 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였다.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이 많은 철강제품에 대하여 무역규제조치 적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2004년까지 당류·설탕과자에 대한 조치도 3건이 취해졌다.

제3장

러시아의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러시아는 구소련이 1991년 붕괴된 이후 반덤핑과 여타 대외무역조치 관련 규범을 제정하기 시작하여, 1993년 최초로 러시아 관세법(Customs Tariff Law No. 5003-I, 1993. 5. 21)에서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반덤핑·상계조치·세이프가드조치를 특정관세로 분류하고 각각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¹²⁾

무역구제조치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법은 1998년 채택된 대외 상품무역 관련 러시아연방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No. 63-FZ, 1998. 4. 1)이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향후 개정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상품 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No. 165-FZ, 2003. 12. 8) (이하 「러시아 무역구제법」)이 도입되었다.

12) 러시아 관세법(Customs Tariff Law), 제7~11조.

현재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를 규율하는 러시아 법제도는 크게 세 개의 법적 문서, 즉 (1) 러시아 무역구제법, (2)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 조치 조사와 관련된 국가의 기능 실행 및 이 조치 부과·재심·취소의 타당성에 대한 제안 준비·제시에 관한 러시아 경제개발무역부의 행정규칙(No. 247, 2007. 7. 20) (이하 「러시아 무역구제조사 규칙」), (3) 관세법(Customs Code No. 61-FZ, 2003. 5. 28)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관세법은 원산지, 관세통계, 관세담당기관의 권한, 통관절차 등을 규정하는바, 반덤핑 등 기타 관세의 징수 및 환급과 같은 절차도 포함한다.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덤핑, 실질적 피해, 동종상품, 반덤핑조치 등의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반덤핑조치 부과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무역구제 조사 규칙은 무역구제법상의 조사 개시·시행·종료, 재심,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 여타 정부기관 협력, 각 조사단계의 기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절차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반덤핑조치는 자의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상 제정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러시아 반덤핑제도 역시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반덤핑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우선 덤핑수입의 존재,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초래하는 피해의 존재 및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요인은 반덤핑조치의 실제적인 조건을 구성한다.

1) 덤핑 존재의 판정

덤핑이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덤핑수입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수출 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국내 소비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가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덤핑의 존재는 제3국 수출 가격 또는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정상적 거래(the ordinary course of trade)’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정상적 거래란 반덤핑 조사대상 상품이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국가의 국내시장에서 동종상품을 가중평균 원가(weighted average cost price)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중평균 원가는 가중평균 생산·거래·관리·일반 비용으로 구성된다.¹³⁾ 비록 WTO 반덤핑협정은 명시적으로 ‘정상적 거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정상적 거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¹⁴⁾을 감안할 때 ‘정상적 거래’에 대한 러시아 법상의 정의가 WTO 규범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출가격 결정

수출가격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상품이 러시아로 수입된 가격을 말한다.¹⁵⁾ 그러나 수출가격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 수출·수입 업체와 제3자 사이의 제휴가 있거나 수출가격에 대한 제한적 사업

1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13조.

14) WTO 반덤핑협정, 제2.2.1조.

15)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25조.

관행이 존재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수출가격은 독립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되거나,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¹⁶⁾ 러시아 독점금지법에 따르면 수입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법인으로 수입자의 이사회 이사, 혹은 20%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자 등은 수입자와 제휴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은 물론 자연인도 제휴자가 될 수 있다.¹⁷⁾

3) 가격비교와 덤핑마진 계산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WTO 반덤핑협정과 같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및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격비교 시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 및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차이점을 고려하고 적절히 공제해야 한다. 덤핑수입 존재의 확인을 위한 가격비교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또는 각각의 거래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을 기초를 둔다. 또한 특정구매자, 특정지역 혹은 특정기간별로 수출가격 양태가 현저히 달라지고, 앞서 두 가지 방식이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근거가 제시될 경우 조사당국은 예외적으로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거래 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¹⁸⁾

덤핑마진은 상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6)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2.5조.

17) 상품시장에서 경쟁 및 독점적 활동의 제한에 관한 러시아 법률(1991. 3. 22 채택, 2006. 7. 26 최종개정), 제4조.

1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2.6조.

$$\text{덤핑마진} = \frac{\text{정상가격(EXW)} - \text{수출가격(EXW)}}{\text{수출가격(CIF)}} \times 100$$

4)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내시장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국의 무역을 상당히 독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국가를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이라 부르기도 한다. WTO는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덤핑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이 국가에서의 정상가격과 상품의 수출가격 간의 엄격한 비교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¹⁹⁾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가격 책정방법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아 결국 조사당국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비시장경제국의 목록을 제시하지는 않으나, 조사 대상이 되는 수입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있다. 러시아 조사당국은 국제통화시장에서 수입국의 통화태환성 수준, 외국기업이 조사대상상품의 생산비용, 국내·수출 가격, 수출규모, 임금 등을 결정할 때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수입국이 비시장경제국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이 국가가 국내시장 가격을 직접 규율하거나 대외무역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대체국의 동종상품 가격 또는 대체국에서 다른 국가(러시아 포함)로 수출되는 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²⁰⁾ 그러나 대부분 경우 정상가격 관련 자료는 기밀자료이므로 덤핑조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대체국 업체들과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해서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상술한 방법 외에도

19) GATT Ad Article VI, para. 1,2 참고.

2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2.3조.

정상가격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국내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²¹⁾

따라서 비시장경제국의 특정 목록이 없는 상황에서는 러시아 조사당국이 해당 수입국의 지위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관하여 러시아의 대중국 반덤핑조사에서 중국의 지위 결정에 관한 사례를 언급할 수 있다. 2007년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최초의 주요 반덤핑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두 개의 중국 수출업체가 협조하여 조사결과 불베어링에 대해 31.3~41.5%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고 잔여관세는 41.5%로 결정되었다. 러시아 조사당국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중국 생산자를 시장경제하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중국 협력업체에 대한 설문응답에 반영된 실제 가격을 이용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중국은 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었다.²²⁾

5) 피해의 존재

WTO 반덤핑규범은 덤핑수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으로 분류하나 피해 유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반면 러시아 무역구제법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 경제 특정 분야의 악화를 의미하고, 특히 국내에서 동종상품의 생산물량과 판매규모 축소, 생산수익성 감소 또는 상품의 재고, 해당 산업에서의 고용, 임금수준,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²³⁾

2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2.3조.

22) Edward Borovikov *et al.*(2008), *The Handbook of Trade Enforcement*, p. 89, Global Competition Review Special Report.

2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9조.

‘실질적 피해의 우려’는 실질적 피해의 초래를 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²⁴⁾ 그러나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있다.

피해판정을 할 때는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산업’부터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는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이라는 용어 대신 ‘러시아 경제분야’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국내산업’이라고 지칭한다. 국내산업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상품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총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의미한다.²⁵⁾ 단 국내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입자이거나 수출자·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내에 두 개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이 있는 경우,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은 WTO 기준²⁶⁾과 동일하나, 이 생산자들이 생산한 해당 상품의 80% 이상을 그 시장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러시아 규정은 WTO 요건을 수용하여 명료화한 것이다.²⁷⁾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판정시 덤핑수입물량, 덤핑수입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²⁸⁾ 만약 상품이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면 조사당국은 덤핑수입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효과를

24)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23조.

25)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14조.

26) WTO 반덤핑법, 제4.1(2)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 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바 있는 (가) 각 시장 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나) 당해 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 내의 당해 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강조 추가)

2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3,3조.

2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3,1조.

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각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의 덤핑마진이 미소마진 수준(2%)을 초과해야 하며, 각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수입품 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고려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인 평가가 적절해야 한다.²⁹⁾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피해판정 관련 고려요소를 WTO 반덤핑협정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러시아 조사당국은 WTO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15개의 관련 경제적 요소(relevant economic factors)를 각각 고려해야 하며,³⁰⁾ 그 외에 과거 덤핑이나 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온 국내산업의 회복수준도 고려해야 한다.³¹⁾ 비록 마지막 요소는 반덤핑협정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협정에서 열거된 요소 목록이 망라적(exhaustive)이지 않은 점 및 이 추가요소가 국내산업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³²⁾ 다만 과거의 덤핑이나 보조금이 초래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다음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지 않으면 된다.

러시아 피해판정 조사의 또 다른 특징은 실질적 피해의 우려와 관련된 검토요소에 있다. 이러한 검토요소에 대한 러시아 법상의 기준은³³⁾

2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3.4조.

3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4조.

3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3.5조.

32) 예컨대 US-Hot-Rolled Steel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We see nothing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which prevents a Member from requiring that its investigating authorities examine, in every investigation, the potential relevance of a particular 'other factor', not listed in Article 3.4, as part of its overall 'examination' of the state of the domestic industry." WT/DS184/AB/R (2001, 8, 23 채택), para. 195.

3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3.8조.

WTO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반덤핑협정 제3.7조의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러시아 무역 구제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WTO 반덤핑협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 조사당국은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1) **실질적인** 수입증가(substantially increased importation)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덤핑수입품의 **현저한** 국내시장 증가율(significant rate of increase)
- (2)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 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핑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가 보유한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 (3)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 (4) 조사대상 상품의 **재고 현황**

그러나 러시아 법은 위에서 진하게 강조된 단어들을 생략하였다.

셋째, 피해의 우려인 경우 반덤핑조치의 적용은 “특별히 주의하여 검토 되고 결정된다”는 WTO 규정도 러시아 법에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실질적 피해의 우려와 관련된 WTO 기준은 러시아 국내법에 덜 엄격하게 반영되어 향후 실질적 피해의 우려를 기초로 덤핑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높여 WTO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실질적 피해의 우려와 관련된 조사는 한 가지 사례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3월 러시아는 중국(대만 포함), 한국,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의 pre-painted steel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 조사는 JSC Severstal, JSC Novolipetsk Steel Works, JSC Magnitogorsk Metallurgical Works의 조사신청에 따라 시작되어, 러시아 무역구제 조사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사건에서 신청업체들은 덤핑된 수입량의 증가, 덤핑 수입품의 증가로 인한 상당한 가격 인하, 중국, 한국, 벨기에, 핀란드,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제품여유분 보유 등을 주장하였다.³⁴⁾

6) 인과관계

덤핑 조사당국은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당국은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덤핑수입품 이외의 모든 요소를 검토하며, 다른 요소로 발생하는 피해를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³⁵⁾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1) 조사당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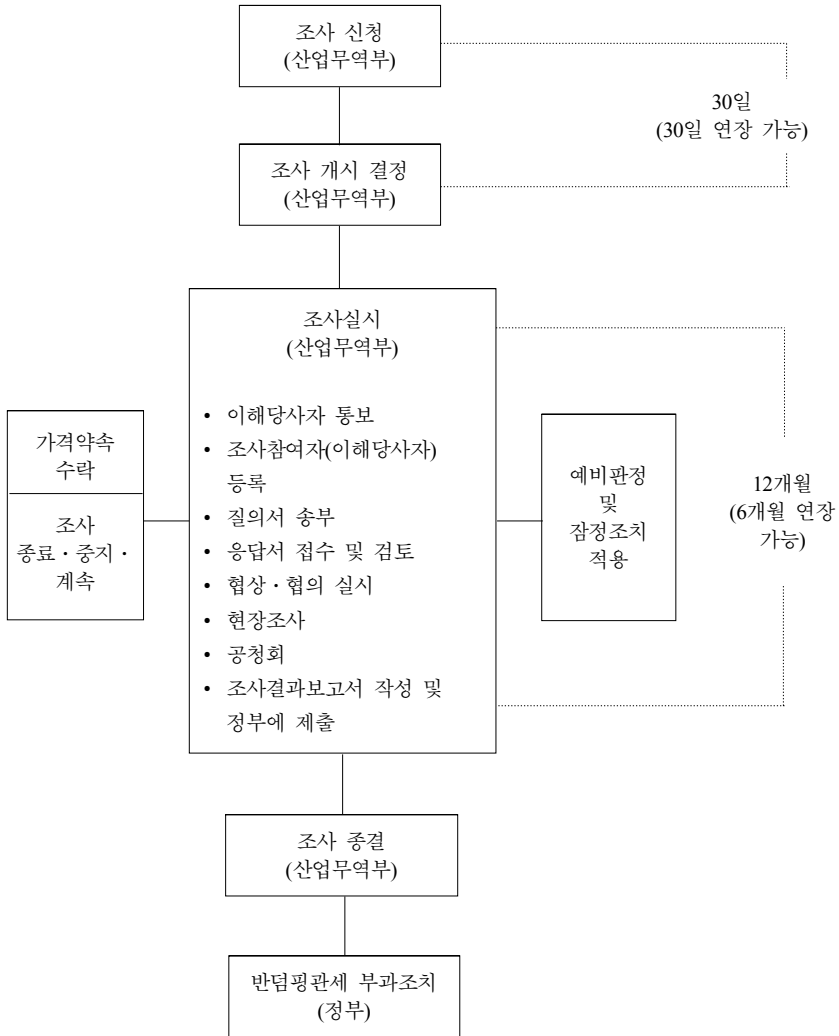
러시아에서는 원래 경제개발무역부(Ministr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가 반덤핑을 포함한 무역구제 조사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5월 본 기관의 명칭이 경제개발부(Ministry for Economic Development)로 변경되고, 무역 관련 기능은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 이관된 관계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된 업무도 역시 산업무역부가 수행

34) Borovikov *et al.*(2008), *op cit.*, pp. 89~90.

35)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3.7조.

하게 되었다. 담당부서는 대외무역국가조정실(Department for State Regulation of External Trade)이며, 덤핑존재와 피해존재 여부를 모두 조사한다.

■ 그림 3-1. 러시아 반덤핑 절차도 ■



2) 조사 개시

반덤핑조사는 조사당국의 직권 또는 수입국 제조업계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국내산업의 대표로서 조사개시를 신청할 권한은 (1)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2) 동종상품 생산자의 과반수(majority)를 구성하는 국내 생산자단체, (3) 동종상품 생산에 있어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생산자단체에 있다. 조사개시 신청서는 이 업체들이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위임받은 대표자도 제출할 수 있다.³⁶⁾

조사개시 신청서에 해당 국내업체가 조사개시를 지지함을 증명하는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이 증거에 따라 조사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조사신청자 포함)는 조사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생산자들이 생산한 동종상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조사신청 지지 생산자의 총생산량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상품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³⁷⁾ 조사신청서는 일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나, 몇 가지 추가사항도 기술해야 한다. 즉 신청자의 신원, 동종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 조사대상상품의 기술 등 사항 외에 국내에서 동종상품을 사용하는 주요소비자에 대한 언급 및 신청자가 희망하는 덤핑관세의 가액과 적용기간도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다.³⁸⁾ 동종상품 소비자의 언급은 향후 공익 고려 시 필요한 것이며, 반덤핑조사 신청자가 제안하는 반덤핑관세율과 적용기간은 향후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때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신청서는 조사담당기관인 산업무역부로 제출되고 등록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검토된다. 그러나 조사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경우 신청서 검토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총 60일을 초과할

36)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2조.

3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3조.

3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4~5조.

수 없다.³⁹⁾ 조사개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당국은 조사대상품의 수출국 담당기관에 조사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서면통보하고,⁴⁰⁾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증거 제출 시 조사신청이 기각된다.⁴¹⁾

조사당국은 조사신청서 검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조사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0일 이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한다.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수출국 담당기관과 이해당사자⁴²⁾에게 조사개시 결정에 대해 통보하며, 5일 이내에 공표한다. 조사개시 통보가 공표된 날짜는 조사개시일로 간주된다.⁴³⁾

3) 조사 실시

조사당국은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외국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응답을 위해 원칙적으로 30일의 기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부 이해당사자가 응답을 위한 추가시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최대 10일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주어지는 응답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7일 이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응답서도 응답을 위해 주어진 시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조사당국에 도착하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⁴⁴⁾

3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12조.

4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11조.

4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5.10조.

42)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1.1조는 반덤핑조사에서의 “이해당사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조사개시 신청자
- 조사대상상품의 외국 수출자·생산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관반수로 구성된 단체, 러시아 수입자 또는 러시아 수입법인 과반수로 구성된 단체
- 외국정부, 원산국·수출국의 담당기관 또는 원산국·수출국이 가입한 국가동맹의 담당기관
- 소비자 단체(주요소비자가 자연인의 경우) 또는 관련 상품을 제조 시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단체

4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6.1조.

조사당국은 필요시 연방관세국(Federal Customs Service), 연방통계국(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등 러시아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반덤핑조치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소비자에게도 문의한다.⁴⁵⁾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당국은 국외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는데, 이에 조사대상인 수출자와 외국 생산자의 명시적인 동의 및 해당 국가의 담당기관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소재지로 담당대표자를 보내고 해당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수도 있다.⁴⁶⁾

조사당국은 조사결과 및 제안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 조사대상자들에게 비기밀형식(non-confidential version)을 전달하고, 조사당국의 웹사이트에도 게재한다.⁴⁷⁾

조사대상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조사당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청회 장소와 일시 및 논의 안건을 사전에 공지한다. 조사대상자들은 공청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조사당국 담당자도 질문할 수 있다. 제공된 구두정보는 공청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되고, 조사당국이 검토한다.⁴⁸⁾

공청회 외에 조사대상자들의 의견대립 발생 시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하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협상 장소와 일시를 늦어도 15일 전에 공지한다. 조사당국 담당자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⁴⁹⁾

44)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8.1조.

45) 러시아 무역구제조사 규칙, 제12.2.4항.

46)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8.2-3조.

4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8.4조.

4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7조.

만약 덤핑마진이 2% 이하이거나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종결된다.⁵⁰⁾

조사기간은 덤핑 및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기간으로, 조사당국이 결정한다.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나, WTO 반덤핑위원회는 조사개시 직전 12개월(예외적으로 최소한 6개월)을 덤핑 조사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적어도 3년을 피해조사기간으로 권고한다. 러시아의 반덤핑 규범과 관행도 반덤핑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⁵¹⁾

조사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며, 조사당국에 의해 최대한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당국이 러시아 정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시한 날은 조사종료일로 간주된다.⁵²⁾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반덤핑 조사기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당국이 기간을 잘 지키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면 EU의 스테인리스 스틸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진척이 상당히 느렸다. 러시아정부는 러시아 생산자들의 반덤핑조사 신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7년 2월 17일, EU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하여 1kg당 0.84유로의 반덤핑 종량 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산 망간철에 대한 반덤핑조사도 역시 지연되어 2005년 7월 25일 반덤핑조사가 개시 되고 조사당국이 판정을 내리기까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⁵³⁾

4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9.1조.

5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9.5조.

5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15조;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КЛАД О результат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полиамид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нитей,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 Украины и ввозимых на тамож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еконфиденциальная версия), Москва 2008 [러시아 연방 산업 무역부, 『우크라이나산 polyamide technical thread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보고서』(비밀형식), 모스크바, 2008], p. 6 참고.

52)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6.9조.

53) Borovikov *et al.*(2008), *op cit.*, p. 89.

앞서 설명한 조사실시 절차는 대부분 WTO 반덤핑협정상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몇 가지 특징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개시 2년 직전에 조사신청을 지지한 생산자 중 어느 한 생산자가 러시아 내의 동종 상품 생산에 있어 35% 이상의 점유율을 갖거나 또는 조사대상상품의 총수입량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 총판매량의 25% 미만을 차지하면, 조사당국은 독점금지정책 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반덤핑조치가 러시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독점금지정책 담당기관은 협조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당국에 평가내용을 전달해야 한다.⁵⁴⁾ 현재는 연방독점금지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러시아에서 독점금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독점금지 관련 조항 이행에 관한 예로, 우크라이나산 polyamide technical thread에 대한 반덤핑 사건에서 조사당국은 2008년 10월 27일 연방독점금지국으로부터 독점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연방독점금지국은 향후 반덤핑조치를 취함에 따라 조사대상 상품의 수입량이 감소하여도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들이 경쟁하여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생산능력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경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덤핑수입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 국내시장가격 상승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⁵⁵⁾

둘째, 조사당국은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상품유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개별 덤핑마진 결정이 불가능할 때 소위 표본추출(sampling) 방식을 이용하는데,⁵⁶⁾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수출자, 생산

54)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6.8조.

55) 『우크라이나산 polyamide technical thread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보고서』, *op cit.*, p. 8.

56) 이런 경우 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sample)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가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자, 수입자 또는 상품의 유형 선택 시 ‘가급적(preferably)’ 관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⁵⁷⁾ 반면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는 ‘가급적’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지 않아,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의 협의가 필수조건이 되었다.⁵⁸⁾

셋째, 조사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정보는 러시아어로 제공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된 원본서류는 공증받은 러시아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⁵⁹⁾ WTO 규범은 언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내 절차인 반덤핑조사가 조사시행국의 언어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단 질의응답서 등 제공해야 할 증거자료를 번역하는 데 있어 정해진 시한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해당사자는 자료번역을 근거로 시한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⁶⁰⁾ 러시아 무역구제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응답서 제출기한에 대한 연장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4) 잠정조치 적용

조사당국은 조사 종료까지 받은 증거자료가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면 예비판정을 러시아 정부에 보고하고, 러시아 정부는 조사시행기간 동안 덤핑수출로 발생하는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많은 국가는 잠정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판정을 하지만,⁶¹⁾ 러시아는 WTO 반덤핑협정과 같이 부정적 예비결과인 경우 예비판정을 의무화하지 않는다.⁶²⁾

57) WTO 반덤핑협정, 제6.10.1조.

5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9.2조.

5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26.5조.

60) Judith Czako *et al.*(2003),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p. 51.

61) *Ibid.*, p. 54.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⁶³⁾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잠정조치는 잠정관세 또는 보증금(현금예치 혹은 유가증권)의 형태로 취해질 수 있는데,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오직 잠정관세만을 잠정조치로 규정하고 있다.⁶⁴⁾ 납부된 잠정관세는 반덤핑 조치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가예산에 송금되지 않는다.⁶⁵⁾ 또한 WTO 반덤핑협정에 의하면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4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관련 무역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한정되는데,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상술한 ‘상당한 비율’의 기준을 덤핑수입량의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⁶⁶⁾

5) 가격약속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덤핑가격을 수정하거나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을 의미한다. 수출자의 가격약속은 잠정조치나 최종 반덤핑 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종결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조사당국은 덤핑과 피해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하고 가격약속이 덤핑의 부정적인 효과를 제거한다고 판정해야 되며, 둘째 러시아 정부가 가격약속을 수락해야 한다. 가격약속에 따른 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면 가격인상률은 덤핑마진보다 낮을 수도 있다.⁶⁷⁾

62)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4.1~2조 및 제14.1조.

6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4.1조.

64) WTO 반덤핑협정 제7.2조와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4.1조.

65)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4.3조.

66) WTO 반덤핑협정 제7.4조와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4.2조.

조사당국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국가정책이익상의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러시아 정부는 가격 약속을 수락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조사당국은 수출자에게 가격 약속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⁶⁸⁾ 이 조항은 WTO 규정⁶⁹⁾과 달리 가격약속의 부인이유를 오직 두 개의 근거(수출자의 과수 및 국가정책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고, 또한 가격약속 부인이유의 제시요건과 이에 대한 수출자로부터 의견수렴 요건을 WTO 반덤핑협정의 기준보다 강화시켰다.

조사당국은 조사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비기밀형식을 요청한다.⁷⁰⁾ 가격약속이 수락되는 경우에도 수출자의 요청 또는 조사당국의 결정에 따라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수 있다.⁷¹⁾ 조사당국은 해당 수출자에게 수락된 가격약속의 이행에 대한 자료 제공 및 그 자료에 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출자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요청자료의 미제공행위를 가격약속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조사당국은 가격약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을 때 해당 수출자에게 그 자료를 요청하고, 수출자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격약속 준수

6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1~2조.

6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3조.

69) WTO 반덤핑협정 제8.3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국 당국은 가격약속의 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 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다른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시된 가격약속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당국은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강조 추가)

7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4조.

7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6조.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 법은 자료 미제출 행위를 가격약속 위반으로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법은 수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덤핑협정과 달리 가격위반 시 수출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⁷²⁾ 가격약속의 위반 또는 철회 시 러시아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잠정조치 혹은 최종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6) 반덤핑관세 부과

반덤핑관세는 조사당국의 긍정적 판정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조사 대상인 모든 상품(수락된 가격약속에 해당하는 상품 제외)에 대해 부과되는데, 러시아에서는 반덤핑 관세가 종가세 또는 종량세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반덤핑관세의 최대 적용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각국의 수출자와 생산자에 대한 개별 덤핑마진을 결정했을 경우, 반덤핑 관세도 조사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표본추출방식 이용 시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사 당시 당국과 협력해서 조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수출자·생산자에게 부과될 반덤핑관세율은 표본에 선정된 수출자·생산자의 가중평균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⁷³⁾

러시아에 두 개 이상의 경쟁시장이 있는 경우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되었을 때, 반덤핑조치는 그 시장으로 들어오는 상품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로 들어오는 해당 수출상품 전체에 부과될 수 있다. 단 수출자가 관련 지역(경쟁시장)에 대해 덤핑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 혹은 가격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이러한 수출상품 전체에 대한 반덤핑조치 부과가 가능하다.⁷⁴⁾

72)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8조.

7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6.3조.

74)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3.4조.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를 덤핑마진 미만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한다.⁷⁵⁾ 이 조항은 소위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principle)」을 반영하였으나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다. 비록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최소부과원칙」을 명시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⁷⁶⁾ 덤핑마진 미만의 잠정조치도 역시 가능하다.⁷⁷⁾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정부가 덤핑수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가액과 기간에 맞는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⁷⁸⁾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할 때 가격인상률은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면 덤핑마진보다 낮을 수도 있다.⁷⁹⁾

7) 반덤핑조치의 비적용⁸⁰⁾

러시아는 유럽연합(EU)과 같이 공익을 고려해서 반덤핑규범에 적합한 반덤핑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조사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사보고서가 등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덤핑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반덤핑조치가 (1) 국내산업, 러시아 경제 전체 또는 상당수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2) 기타 국익상의 중요한 사정이 발생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을 번복

75) WTO 반덤핑협정, 제9.1조.

76)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6.3조.

7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4.2조.

7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1조.

7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5.1~2조.

8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7조.

할 수도 있다. 조사당국은 반덤핑조치의 비적용 관련 통보를 해당 수출국의 담당기관과 여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공표한다.

러시아 무역구제법의 제정 연혁은 길지 않으나 공익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 2005년 7월 25일 우크라이나산 망간철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러시아 정부는 ferro-alloy 산업보호로 인한 잠재적 혜택보다 러시아 망간철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고 결정하여 상당한 덤핑마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⁸¹⁾

공익조항 이외에 반덤핑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수입품에 대한 경제적 금지·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특별 관세제체 혹은 관세절차
- 무상원조형태의 수입품

첫째 요인은 특히 자유무역이나 관세동맹 등 특별 관세제체를 의미하며, 둘째 요인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인도적 원조형태의 의약품 등의 수입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8) 반덤핑조치의 재심

가) 상황변동 재심

조사당국은 직권 또는 반덤핑조치 적용 1년 이후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반덤핑조치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할지 혹은 상황이 변동한 관계로 이 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상황변동 재심 기간은 최대한 12개월이고 재심 신청 시 신청사유에 따라 (1) 반덤핑조치의

81) Borovikov *et al.*(2008), *op cit.*, p. 89.

지속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2) 현행 반덤핑조치의 가액이 덤핑과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⁸²⁾

나) 신규수출자 재심

원조사기간 동안 조사대상상품을 수출하지 않은 외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개별적 덤핑마진의 계산을 요청하여 소위 신규수출자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관련 신청서는 현행 반덤핑조치를 부과받은 외국 수출자·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러시아 규범은 이 요건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한 가지 추가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신규수출자 재심 요청자가 조사대상이 되는 상품의 상당 물량을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계약상 수출할 예정이고, 수출 중단 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⁸³⁾ 이 요건은 WTO 반덤핑협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⁸⁴⁾ 따라서 러시아 법은 신규수출자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자의 범위를 좁혀 향후 WTO 규범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신규수출자 재심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기간 동안 신규수출자의 상품에 대해 반덤핑조치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WTO 반덤핑협정에서와 같이 조사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반덤핑관세의 소급적용에 대비하여 조사개시 이후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조사를 보류하고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⁸⁵⁾

82)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4조.

8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5조.

84) WTO 반덤핑협정, 제9.5조.

85) WTO 반덤핑협정, 제9.5조.

다) 종료 재심

반덤핑관세는 종료 재심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종료 재심은 원조사(original anti-dumping investigation)와 달리 미래지향적이다. 따라서 반덤핑관세가 종료될 경우 발생하는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이라는 미래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원조사와 같이 과거 조사 대상기간 동안 덤핑과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지 않는다.⁸⁶⁾

러시아의 경우, 종료 재심은 조사기관의 직권 또는 조사신청에 의해 개시되며, 반덤핑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⁸⁷⁾ 여기서 강조할 부분은 러시아 반덤핑 규범은 WTO 반덤핑협정과 달리 덤핑과 피해의 지속가능성을 종료 재심의 직접적인 필요요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과 피해의 재발 가능성 여부 검토 시 조사당국이 모든 관련 요소 중 반덤핑 관세 적용기간 동안 덤핑과 피해의 지속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⁸⁸⁾을 감안할 때 러시아 법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사실을 종료 재심의 간접적인 근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종료 재심신청서 제출기한을 단순히 ‘합리적 기간(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기한은 결국 각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⁹⁾ 러시아에서 종료 재심신청서는 늦어도 반덤핑관세의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제출해야 하고, 종료 재심은 12개월 이내 종결된다. 종료 재심이 끝날 때까지 현행 반덤핑조치가 연장되고, 종료 재심 결과 덤핑과 피해의 재발에 대한

86) WTO 상소기관 보고서, 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WT/DS244/AB/R(2004. 1. 9 채택), para. 107.

8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3조.

88)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3조 참고. 덤핑과 피해의 재발의 가능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덤핑과 피해의 지속의 여부 (2) 피해제거와 반덤핑조치의 완전·부분적 적용간의 관계의 존재 (3) 덤핑과 피해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 생산자 또는 상품시장의 상태.

89)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연장된 반덤핑관세의 금액은 해당 납부자에게 환급된다.⁹⁰⁾

라) 가격약속 재심

러시아 무역구제법상 반덤핑관세의 적용기간과 재심절차는 가격약속에도 준용된다.⁹¹⁾ 따라서 종료 재심이나 상황변동 재심의 결과 연장되지 않는 한 가격약속은 수락 후 5년 이내 소멸된다.

마) 사법적 재심

WTO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국내법에 반덤핑조치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각 회원국은 특히 최종판정과 관련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재심 및 반덤핑조치의 재심(반덤핑협정 제11조) 시 내려지는 판정의 재심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 중재 또는 행정법원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⁹²⁾

러시아에도 사법제도가 존재하는데, 크게 연방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중재법원 및 각각의 하위법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무역구제분쟁은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법원에서 담당한다.⁹³⁾ 러시아 중재법원제도는 고등중재법원, 각 구의 연방중재법원, 중재상고법원 및 연방구성체 중재법원을 포함하고, 이에 따라 분쟁해결절차가 네 개의 단계를 거쳐 진행될 수 있다. 반덤핑 관련 분쟁은 일반적으로 우선 제1단계 법원으로 해당 연방구성체 중재법원에서 다루어진다. 미발효된 제1단계 법원의 판결은 제2단계 법원인 중재상고법원에서 심사될 수 있다. 러시아에는 20개 중재상고법원이 있어,

90)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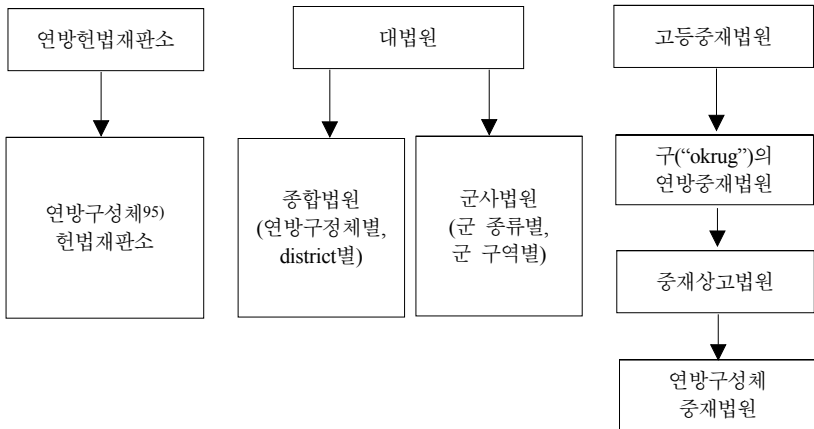
91)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17.7조.

92) WTO 반덤핑협정, 제13조.

93)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6조.

제3단계에서는 10개 지정 구의 연방중재법원이 파기원(破棄院, court of cassation)으로 하급법원(연방구성체의 중재법원 및 중재상고법원)의 기발효된 판결을 심사한다. 마지막으로 고등중재법원은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의 활동과 판결을 감시하는 최고 법원의 역할을 수행한다.⁹⁴⁾

■ 그림 3-2. 러시아의 사법제도 ■



일부 반덤핑 관련 분쟁은 상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등중재법에서 직접 다루어질 수도 있다. 즉 고등중재법원이 1차 심사로 처리하는 사안은 러시아 대통령, 정부, 연방행정기관에 의한 규범적 문서(normative act)와 러시아 대통령, 상원·하원, 정부의 비규범적 문서(non-normative act)의 합법성 등에 관한 분쟁들이다.⁹⁶⁾ 규범적 문서란 개별적 주체(자연이나 법인)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구속력이 있는 문서

94) 러시아 중재법원법(1995. 4. 28) 참고.

95) 러시아는 연방국가로서 83개의 연방 구성체가 있고, 그 중 21개 공화국("respublika"), 9개 크라이("kray"), 46개 주("oblast"), 특별행정단위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1개 자치주("avtonomnaya oblast"), 4개 자치구("avtonomnyy okrug")가 있다. 러시아헌법 제65조 참고.

96) 러시아 중재법원법, 제10.1(1)조.

(헌법, 법률, 법률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지침 등)를 의미한다. 비규범적 문서는 규범적 문서와 달리 오직 지정된 해당자에게만 적용된다. 예컨대 규범적 문서인 러시아 무역구제 조사 규칙(러시아 경제개발무역부 채택) 또는 개별 외국 수출자·생산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비규범적 문서)은 직접 고등중재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9) 조사 및 반덤핑조치 관련 통보⁹⁷⁾

조사개시 통보는 조사대상이 되는 상품의 설명, 덤핑 주장의 근거, 피해 초래의 사실 요약, 의견서 송부가능주소, 조사 관련 의견서 제출·공청회 요청·의견대립 이해당사자를 위한 협상요청 가능기간을 기재한다. 각 절차의 기간은 조사당국이 결정하며,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조사당국은 조사의 중지·종결, 반덤핑조치의 적용·재심·취소에 대한 통보를 관련 수출국의 담당기관과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고 공표한다.

잠정조치에 대한 통보는 덤핑과 피해의 예비판정을 설명하고, 잠정 조치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을 명시하며, 수출자명, 상품설명, 덤핑마진 가액과 계산방법, 피해판정의 근거, 긍정적인 예비판정의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조사 종료에 대한 통보 또는 가격 약속 수락에 대한 통보는 관련 사실과 적용법, 반덤핑관세 부과의 근거 또는 가격약속 수락의 근거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가격약속의 수락인 경우 조사 중지·종결 통보는 가격약속의 비기밀형식을 포함해야 한다. 조사 및 반덤핑조치 관련 모든 통보는 *Rossiyskaya Gazeta*에 공표된다.

[표 3-1]은 상술한 러시아 반덤핑규범과 WTO 반덤핑협정을 간략히 비교하고 있다.

97)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5조.

표 3-1. 러시아 반덤핑규범과 WTO 반덤핑협정 비교

주요 쟁점	러시아 무역구제법	WTO 반덤핑협정
용어정의	‘정상적 거래’ ‘실질적 피해’	해당 정의 없음
피해판정	15개의 관련 경제적 요소(relevant economic factors) + 과거 덤핑이나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국내산업의 회복수준 고려	15개의 관련 경제적 요소 고려(제3.4조)
	‘실질적 피해의 우려’ 기준 완화	‘실질적 피해의 우려’ 기준 강화
반덤핑 조사	국내에서 동종상품을 사용하는 주요소비자에 대한 언급 및 신청자가 희망하는 덤핑관세의 가액과 적용기간을 조사신청서에 기재 의무	해당 내용 없음
	조사 개시 2년 직전에 조사신청을 지지한 생산자가 러시아 내의 동종상품 생산에 있어 35% 이상의 점유율을 갖거나 조사 대상 상품의 총수입량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 총판매량의 2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반덤핑조치가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립금지정책 담당기관의 평가 필요	독점금지 관련 조항 없음
	표본추출(sampling) 방식 이용 시 반드시 관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의 협의 필요	협이가 필수조건이 아님
가격약속	수출자의 가격약속 이행에 대한 자료 미 제출 시 가격약속 위반으로 간주	해당 사항 없음
반덤핑관세 부과	러시아 정부가 공익을 고려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공익 고려사항 없음
재심	신규수출자 재심을 받기 위해 수출자가 조사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상당 물량을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계약상 수출할 예정이고, 수출 중단 시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을 입증 요망	해당 요건 없음
	종료 재심은 늦어도 반덤핑관세의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신청	종료 재심은 반덤핑관세의 종료일 이전 합리적 기간 이내 신청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러시아는 지역통합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약 70년간 구소련 내에서 경제, 무역 등의 분야에서 맺은 관계를 유지·확대시키기 위해 CIS가 설립되었고, 1993년 CIS 국가들은 경제연합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의 주요 목적은 CIS 지역 내에 자유무역, 관세동맹과 통화동맹을 체결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연합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각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변경됨에 따라 CIS 지역에서의 경제연합 설립이 초기에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 1994년 4월 15일 CIS 다자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고, 1999년 4월 2일 일부 개정되었다. 이 외에 CIS 국가간의 양자 FTA가 체결되어 CIS 지역에서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가 조성되었다.⁹⁸⁾

98) CIS 무역통합에 대한 연구는 Sherzod Shadikhodjaev(2009), "Trade Integration in the CIS Region: A Thorny Path towards a Customs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2(3) (게재예정) 참고.

러시아는 CIS 다자 FTA에 서명하고, 러시아 하원의 비준절차 개시를 위해 러시아 정부가 1996년 2월 26일 CIS FTA를 대통령에게 제출 하였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11개 CIS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였고, 2000년 8월 CIS 국가가 아닌 세르비아 (FTA 체결 당시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와도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10일 CIS 국가 중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라는 국제경제기구를 창립하여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 (SES: 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1월 가입했다가 2008년 12월 임시탈퇴하였다. EurAsEC 회원국 들은 다자 및 양자 FTA를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는 관세동맹 설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 간의 관세동맹을 창설한 이후에 나머지 회원국이 관세동맹에 가입할 예정이다. EurAsEC은 궁극적으로 공동 상품·서비스·노동·자본 시장과 공동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공동경제구역을 설립할 목표를 세웠다.⁹⁹⁾

2003년 9월 19일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및 우크라이나 4개국 간에 공동경제구역창립협정(Agreement on the Formation of a Single Economic Space)이 체결되어 CIS 내에서 새로운 무역통합운동이 시작 되었다. 2004년 9월 15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국의 대통령은 공동경제구역(SES) 관련 29개의 추가협정에 향후 합의 하고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다. SES 설립목적과 추진방향은 대부분 EurAsEC와 유사한데, 이 통합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이유는 CIS 경제

99) EurAsEC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herzod Shadikhodjaev(2008),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KIEP Working Paper 08-05 참고.

통합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우크라이나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04년 12월 Viktor Yushchenko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이 바뀐 이후 EU와 NATO에 통합할 의지를 갖게 되어 SES에 참여할 의지가 없어졌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SES 프로젝트가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였다.¹⁰⁰⁾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참여하는 지역통합은 CIS 내의 자유무역, 세르비아와의 자유무역 및 EurAsEC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러시아 RTA 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CIS FTA는 역내무역에서 무역구제 부과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지만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사실시 및 관련 조치 적용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다. 무역구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우선 이해당사국에 조치 적용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협의를 제안해야 하고, 협의제안서에는 문제사안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 시 해당 당사국들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성고가 없으면 무역구제를 부과할 수 있다. 긴급 시 협의 전에 무역구제 적용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무역구제 조사 시에는 해당 당사국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하고, 무역구제 부과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과 고려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국에 고지해야 한다.¹⁰¹⁾

100) Wikipedia, “Еди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공동경제구역] <http://ru.wikipedia.org> (2009. 3. 20 검색) 참고.

101) CIS FTA, 제13a조(“특별무역조치”) 참고.

러시아가 CIS 국가들과 체결한 양자 FTA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며, 대부분 반덤핑조치 부과에 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러·세르비아 FTA는 문서 접근이 불가능한 관계로 반덤핑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EurAsEC도 반덤핑 관련 규범을 두고 있는데, 역내무역과 역외무역에 대한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관련 주요 규범은 2000년 2월 17일 체결되고 2003년 10월 28일 개정된 관세동맹 회원국 무역에서의 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의 적용메커니즘에 관한 의정서(이하에서 「2000년 무역구제의정서」라고 명칭) 및 2008년 1월 25일 체결된 제3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에서 「2008년 무역구제협정」이라고 명칭)이다. 전자는 모든 EurAsEC 회원국에 적용되나, 후자는 EurAsEC 관세동맹을 먼저 창설하고자 하는 러시아,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에만 적용된다. 또한 전자의 적용범위는 역내외무역을 포함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역외 무역, 즉 제3국에만 해당된다.

역내무역과 관련하여, 2000년 무역구제의정서는 무역구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이해당사국에 무역구제 조사 만료 30일 이전까지 협의요청을 하며 관련 무역구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상호 협의에 이르지 못할 시, 문제의 사안을 EurAsEC 통합위원회(Integration Committee) 산하에 있는 국내시장보호 위원회(Commission for Protection of Domestic Markets)에 회부해야 한다. 국내시장보호위원회는 조사국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보다 덜 보호

주의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조사국은 이 제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조사국이 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내시장보호위원회에 사전통보를 하고 자국의 법에 따라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협의 이전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단 잠정 조치 후 협의를 즉시 개시해야 되고 통합위원회에도 이 조치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상술한 무역구제의정서는 회원국들이 가급적 역내무역에서 무역구제 발동을 자제할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EurAsEC 국가이사회(Interstate Council)는 향후 역내무역에서 무역구제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를 2002년 5월 13일 결정에 명시하였다.¹⁰²⁾

역외무역과 관련해서는 2000년 무역구제의정서와 2008년 무역구제 협정이 적용된다. 2000년 무역구제의정서에 따르면 EurAsEC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 무역구제를 취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적용하기 30일 이전에 이해회원국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2008년 무역구제협정의 반덤핑 부분은 대체로 러시아 무역구제법과 유사하나 관세동맹의 성격상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당사국들의 경제의 분야’) 범위가 한 회원국에 그치지 않고 전 관세동맹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국내산업이란 관세동맹 내에 존재하는 동종상품의 생산자 전체 혹은 동종상품 총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의미한다.¹⁰³⁾ 또한 반덤핑조사 기능은 관세동맹 설립·운영 관련 결정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관세동맹위원회(Customs Union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¹⁰⁴⁾

102) 본 단락의 내용은 Shadikhodjaev(2008), *op cit.*, pp. 34~38 요약한 부분이다.

103) 2008년 무역구제협정, 제2조.

104) 관세동맹위원회의 구성, 주요기능과 활동은 관세동맹위원회에 관한 조약(2007, 10, 6) 참고.

또한 2008년 무역구제협정은 러시아 무역구제법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우회덤핑방지조항도 도입하였다. 수출기업들은 종종 제3국이나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려 한다. 이렇듯 수출방법을 바꾸어 반덤핑관세 또는 가격약속을 회피하는 관행을 우회덤핑이라 한다. EurAsEC 관세동맹에서 우회덤핑방지조치는 덤핑 수입상품의 부품과 일부분 또는 제3국에서 들어오는 덤핑 수입상품 및 그 부품과 일부분에 대해 부과된다. 우회덤핑방지 관련 조사는 이해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사기관(관세동맹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된다. 관련 신청서는 우회덤핑의 존재, 우회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덤핑조치의 상쇄효과와 생산·판매량 혹은 동종상품의 가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는 9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조사기간 동안 잠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우회덤핑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납부된 금액이 환급된다. 긍정적 판정 시에는 반덤핑 조치가 해당 상품의 부품과 일부분 또는 제3국에서 수입되는 덤핑 수입 상품 및 그의 부품과 일부분에도 확대될 수 있다.¹⁰⁵⁾

한편 EurAsEC 무역구제(반덤핑)제도는 아직 미완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과정에서 EurAsEC 전체에 적용되는 규범과 EurAsEC 내에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 간의 관세 동맹에 관련된 규범 간의 관계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일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규범충돌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무역 구제협정에서 ‘제3국’이란 2007년 10월 6일 체결된 공동관세구역 설립과 관세동맹 형성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러시아, 벨로루시 및 카자흐스탄)이 아닌 국가로 간주되는데,¹⁰⁶⁾ 이에 따라 나머지 EurAsEC 회원국인

105) 2008년 무역구제협정, 제18조.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기타 국가는 제3국
으로 간주된다. 반면 2000년 무역구제의정서는 EurAsEC 회원국이 아닌
국가를 제3국으로 본다. 따라서 역외무역 적용에서 2000년 무역구제의
정서와 2008년 무역구제협정이 서로 충돌할 여지가 크며, 향후 EurAsEC
법제도를 조화·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범충돌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06) 2008년 무역구제협정, 제2조.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크게 기업실무 및 정부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덤핑수입이 기업의 관행이기 때문에 러시아 반덤핑제도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해당 한국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덤핑수입을 방지하는 메커니즘(반덤핑 조치)은 정부가 마련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한·러 정부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보다 늦게 제정된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주요 국가들의 일부 선도적 반덤핑제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한국 국내 법의 개선과정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러시아 반덤핑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 등 외국 수출업체들에 몇 가지 유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첫째, 관련 수출자들은 가격약속을 제시하는 경우 덤핑마진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고려하여 덤핑마진 미만의 가격인상을 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에서 구속력이 있는 공익

조항에 따르면 러시아 소비자(생산자 포함)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덤핑 수입상품의 경우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 국내소비자는 물론 반덤핑조사 대상인 한국기업에도 유리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 반덤핑제도는 한국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우선 2008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철강제품 반덤핑사건은 한국업체들이 참여하는 반덤핑조사로, 이 사건은 러시아에서 최초로 피해의 우려를 근거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우려에 대한 판정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대부분 WTO 반덤핑협정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반덤핑절차의 일부는 전혀 명료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를 들어, ‘최소부과원칙’을 활용할 경우 피해수준 산정 및 덤핑마진의 비교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들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조사당국을 설득하고 ‘최소부과원칙’의 실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러시아의 반덤핑제도는 조사절차의 부당한 지연과 같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수출업체들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업체들은 러시아 국내 사법절차를 따르거나, 향후 러시아의 WTO 가입절차 완료 및 한·러 FTA 체결에 따른 다자·양자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칠레와 최초의 FTA를 체결한 이후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은 6개 FTA (한·ASEAN FTA 상품, 서비스 포함)를 체결하였고, 7개 FTA협상은 추진 중이며, 7개 FTA는 검토 중인 상황이다.¹⁰⁷⁾ 한·러 양국간 경제 동반자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도 역시 검토 중이며 한·러 BEPA 주요 추진일정은 [표 5-1]과 같다.

■ 표 5-1. 한·러 BEPA 일지 ■

2005. 11	양국 정상에 제출한 Action Plan에서 공동전문가 그룹을 창설기로 합의
2007. 10. 31~11. 1	한·러 BEPA 공동연구그룹 제1차 회의(서울)
2008. 7. 8~7. 9	한·러 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모스크바)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웹페이지, <http://www.fta.go.kr>.

향후 한·러 BEPA 협정문에는 반덤핑규정도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양국에 적용되는 반덤핑규정을 작성하기 위해 우선 양국의 FTA상 반덤핑규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⁸⁾ 앞서 러시아 FTA상 반덤핑규정을 이미 살펴보았고, 한국이 기 체결한 FTA에서 무역구제 중 반덤핑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의 반덤핑규정은 가장 단순하며, 당사국들이 WTO 반덤핑규범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⁰⁹⁾ 한·칠레 FTA는 GATT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양국간의 반덤핑 관련 분쟁을 본 FTA의 분쟁해결 제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¹¹⁰⁾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와

10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http://www.fta.go.kr/user/index.asp>(2009. 3. 25 검색).
 108) 다른 국가의 FTA상 반덤핑 특정 규정 분석은 Dukgeun Ahn(2008), “Foe or Friend of GATT Article XXIV: Diversity in Trade Remedy Rul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pp.111 ~ 114 참고.
 109)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7조.

동일한 규정 이외에 추가로 ‘제로잉’ 관행방지 규정 및 ‘최소부과원칙’을 협정문에 도입하였다.¹¹¹⁾ 한·EFTA FTA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당사국들이 반덤핑절차 발동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더라도 사전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덤핑수입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조치의 적용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규정한다.¹¹²⁾ 따라서 한·EFTA FTA 당사국들은 궁극적으로 역내무역에서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여지가 있다. 한·미 FTA는 절차적인 이슈를 다루며, 특히 조사개시 이전 조사신청 통보 및 조사개시 이후 가격약속 검토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가격약속을 하고자 하는 수출자를 위한 협의기회 부여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별도의 무역구제위원회도 설치한다.¹¹³⁾

FTA 체결 이후에 반덤핑조치가 증가할 것인지 혹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검증된 바 없고, 각국의 교역구조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조치 부과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FTA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조치 부과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어렵다.¹¹⁴⁾ 다만 한국 FTA와 러시아 FTA의 반덤핑규정 내용을 감안할 때 향후 한·러 BEPA의 반덤핑규정 작성 시 크게 세 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양국간 반덤핑조치 금지, 반덤핑조치 발동 자제 또는 반덤핑조치 허용 등의 시나리오이다. 1995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까지 약 14년간 한국의 대러시아 반덤핑조사 개시 사례는 3건, 적용된

110) 한·칠레 FTA, 제7.1조.

111) 한·싱가포르 FTA, 제6.2조.

112) 한·EFTA FTA, 제2.10조.

113) 한·미 FTA, 제10.7~10.8조.

114) 자세한 내용은 안덕근(2008),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송원근 편,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p.176 참고.

반덤핑조치 사례는 2건이 있었고¹¹⁵⁾ 앞으로 그 수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반덤핑조치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시나리오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한국이 러시아에 비해 반덤핑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던 EFTA 국가에¹¹⁶⁾ 대해서도 한·EFTA에서 반덤핑조치 금지를 향후 논의사항으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러 BEPA에 반덤핑조치 금지 시나리오는 적합하지 않다. 양국간에 반덤핑조치 자체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반덤핑조치의 허용 시나리오가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국이 WTO 반덤핑규범 준수를 인정하고, 만약 한·러 BEPA 체결 시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한·ASEAN FTA에서 규정한 것처럼 비 WTO 회원국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 시 의무에 따라 WTO 규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¹¹⁷⁾ 또한 BEPA 반덤핑규정의 용어 해석은 GATT 제6조와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도입하여도 무방하며,¹¹⁸⁾ ‘최소부과원칙’을 반영시켜도 좋을 것이다.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러시아의 무역구제법은 러시아가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WTO 규범과 일치하도록 제정되었고, 준비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반덤핑법과 관행에 대한 조사 및 WTO 가입협상에서의 EU, 미국 등 기존 회원국의

115)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op cit*.

116) 1995. 1. 1~2008. 6. 30 기간 동안 한국이 EFTA 국가들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사례 및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각각 아이슬란드 0(0)건, 리히텐슈타인 1(1)건, 노르웨이 0(0)건 및 스위스연방 1(0)건이었다. 그리고 EFTA 국가들에 대한 기타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조사개시·반덤핑조치적용 사례의 총 건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참고.

117) 한·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7조의 각주 2 참고.

118) 예를 들어 CIS FTA 제1.3조에 따르면, “본 협정 또는 체결국 간의 기타 협정에서 용어가 특별히 정의되지 않을 경우 체결국들은 1969년 비엔나 조약법협약과 GATT/WTO 협정을 기초로 용어를 해석한다.” (비공식 번역)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조항과 독점금지와의 관련된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특히 독점금지요인은 한국 반덤핑법의 개선 과정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즉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러시아는 조사개시 2년 직전에 조사신청을 지지한 생산자 중 어느 한 생산자가 러시아 국내 동종상품 생산에서 3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거나, 또는 조사대상 상품의 총수입량이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 총판매량의 25% 미만을 차지하면, 조사당국은 독점금지정책 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여 반덤핑조치가 러시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한국 반덤핑법에 이러한 경쟁제고조항을 도입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산업 피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제도의 취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반덤핑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반면 이 조항은 국내에서 생산자의 독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무역구제제도 시행 시 시장의 경쟁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고 러시아와 같은 WTO 신규가입 예정국도 경쟁제고조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의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검토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미국, EU, 인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이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 이용국과 달리 러시아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권리를 인지하는 과정에 있고, WTO 가입 이후에는 이와 같은 국내산업을 보호할 권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체적·절차적 발동요건에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였다. 러시아의 공익조항과 독점금지 관련 조항은 WTO 규범에서 의무화되지 않는 독특한 규정이지만, 러시아 무역구제법에 있어 실질적 피해의 우려 기준 완화 및 신규수출자 재심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자 범위의 제한은 향후 WTO 규범과의 충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는 입법 개선을 통해 국내법을 WTO 기준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후에 반덤핑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법이 계속 발전되고 개선될 여지도 있다. 입법 개선 이외에는 러시아 무역구제법은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과 국내법의 충돌 발생 시 조약의 우선적용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어¹¹⁹⁾ 이 원칙이 그 자체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반덤핑제도는 한국의 기업 실무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전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반덤핑조사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특히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에는 반덤핑 관행이 활발해지면서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러시아의 반덤핑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조치를 당할 경우 러시아 중재절차에 회부하거나 다자·양자 정부간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기업실무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덤핑법 외에 반덤핑 관행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공개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러 BEPA 협상 시 반덤핑 조항을 작성할 때 기 체결 한국 FTA가 기초가 될 것이나 러시아 FTA, 특히 EurAsEC 관세 동맹에서의 반덤핑제도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119) 러시아 무역구제법, 제38조.

참고 문헌

●● 국문 자료

- 안덕근. 2007. 『한·미 FTA 무역구제제도의 의미와 향후 대응전략』, 송원근 편 『한·미 FTA 분야별 협상결과 평가 및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pp. 155~208.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08. 『해외시장에서의 한국 상품에 대한 2008 수입규제 총람』.

●● 외국문 자료

- Ahn, Dukgeun. 2008. "Foe or Friend of GATT Article XXIV: Diversity in Trade Remedy Rul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1(1).
- BNA International Trade Daily. 2009. "WTO Chief Cites 'Significant Slippage' Toward Protectionism Since Late January." (March 30)
- Borovikov, Edward *et al.* 2007. *The 2007 Handbook of Trade Enforcement*. Global Competition Review Special Report.
- _____. 2008. *The Handbook of Trade Enforcement*. Global Competition Review Special Report.
- Czako, Judith *et al.* 2003.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port by the WTO Secretariat. 2008. *Trade Policy Review: Republic of Korea*. WT/TPR/S/204. (September 3)

Shadikhodjaev, Sherzod. 2008.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KIEP Working
Paper 08-05.

_____. 2009. "Trade Integration in the CIS Region: A Thorny Path
towards a Customs Unio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 12(3). (계재예정)

WTO 상소기관보고서.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WT/DS244/AB/R (2004. 1. 9 채택).

_____. US - Hot-Rolled Steel. WT/DS184/AB/R (2001. 8. 23 채택).

● ● 웹사이트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fta.go.kr>

Wikipedia. "Еди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공동경제구역].
<http://ru.wikipedia.org>

WTO. <http://wto.org>

_____.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_____. "Statistics on Safeguard Measure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afeg_e/safeg_e.htm

_____. "Statistics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ttp://www.wto.org/english/tratop_e/scm_e/scm_e.htm

부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No. 165-FZ, 2003. 12. 8 채택; 2006. 2. 18 및 2006. 12. 30 개정)의 구성

제1장 총칙

- [제1조] 연방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제2조] 연방법률의 주요 용어
- [제3조] 조사
- [제4조] 조사실시를 담당하는 연방행정기관
- [제5조] 조사결과에 대한 결정

제2장 세이프가드 조치

- [제6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일반 적용원칙
- [제7조] 러시아 경제분야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 판정
- [제8조]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부과
- [제9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
- [제10조]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기간과 재심

제3장 반덤핑 조치

- [제11조] 반덤핑 조치의 적용근거
- [제12조] 덤핑수입 존재의 판정
- [제13조] 덤핑수입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분야에 발생하는 피해의 판정
- [제14조] 잠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 [제15조] 조사대상인 상품 수출자의 가격약속
- [제16조] 반덤핑관세의 적용
- [제17조] 반덤핑조치의 적용기간과 재심

제4장 상계관세조치

- [제18조] 상계관세조치의 일반 적용원칙
- [제19조] 외국(해외국가연맹)의 보조금을 특성성이 있는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원칙
- [제20조]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분야에 발생하는 피해의 판정
- [제21조] 잠정 상계관세의 부과
- [제22조] 조사대상인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외국(해외국가연맹) 또는 상품 수출자의 약속
- [제23조] 상계관세의 부과 및 적용
- [제24조] 상계관세조치의 적용기간과 재심

제5장 조사실시

- [제25조] 조사실시의 근거
- [제26조] 조사의 개시와 실시
- [제27조] 공청회
- [제28조] 반덤핑·상계조치 적용 이전의 조사실시
- [제29조] 반덤핑조치 적용 이전 조사실시의 특징
- [제30조] 상계조치 적용 이전 조사실시의 특징
- [제31조] 조사실시 시 이해당사자
- [제32조] 비공개 정보
- [제33조]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부여받는 수입 시 러시아 경제분야 정의의 특징
- [제34조] 해외 국가(해외국가연맹)로부터 특성성이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주장 시 그 보조금 존재의 판정을 위한 협의
- [제35조] 조사와 관련된 결정의 통보

제6장 최종 조항

- [제36조] 사법적 보호
- [제37조]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관세조치의 비적용
- [제38조] 러시아 연방의 조약
- [제39조] 연방법률의 채택으로 인한 러시아연방의 일부 법률조항의 무효화
- [제40조] 연방법률의 발효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¹²⁰⁾

1.	Application Received	June 1993
2.	Working Party Established Chairperson: H.E. Mr. Stefan Haukur Jóhannesson (Iceland, Dec 2003 -) Mr. Kare Bryn (Norway, Jul 2000 - Dec 2003) Mr. W. Rossier (Switzerland, Oct 1993 - Jul 2000)	16-17 June 1993
3.	Memorandum	1 March 1994 27 October 1995 25 October 1995 7 April 1997
4.	Questions and Replies	2 June 1995
5.	Meetings of the Working Party	17-19 July and 4-6 December 1995 30-31 May and 15 October 1996 15 April, 22-23 July and 9-10 December 1997 29-30 July and 16-17 December 1998 25-26 May and 18-19 December 2000 26-27 June 2001 23-24 January, 25 April, 20 June and 16 December 2002 10 January, 6 March, 10 April, 10 July and 30 October 2003 5 February, 2 April, 16 July and 8 November 2004 17 February, 15 April, 24 June and 19 October 2005 23 March 2006

120) WTO, "Accessions: Russian Federation,"
http://www.wto.org/english/thewto_e/acc_e/a1_russie_e.htm (2009. 4. 8 검색).

6.	<p>Recently submitted documentation</p> <p>(a) Additional Questions & Replies</p> <p>(b) Information on agriculture (WT/ACC/4)</p> <p>(c) Information on services (WT/ACC/5)</p> <p>(d) SPS/TBT checklists (WT/ACC/8)</p> <p>(e) TRIPS checklist (WT/ACC/9)</p> <p>(f) Legislative Action Plan</p>	<p>24 January 2005</p> <p>18 March 2008</p> <p>25 October 1995</p> <p>10 July 1997 (TBT) 26 June 2007 (SPS)</p> <p>25 October 2000</p> <p>14 August 2007</p>
7.	<p>Market Access Negotiations</p> <p>Goods Offer</p> <p>(a) initial</p> <p>(b) latest</p> <p>Services Offer</p> <p>(a) initial</p> <p>(b) latest</p>	<p>16 February 1998</p> <p>15 February 2001</p> <p>8 October 1999</p> <p>15 February 2001</p>
8.	Factual Summary	
9.	Draft Working Party Report latest revision	<p>28 March 2002</p> <p>15 October 2004</p>

Russia's Anti-dumping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Sherzod Shadikhodjaev and Jooyoung Yang

As of 31 December 2008, Russia initiated two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imposed one measure with respect to Korean goods. In light of expanding trade between two countries with Korea posting a trade surplus since 2006, Russia is expected to more frequently use its anti-dumping mechanism against Korean products. The Federal Law on Safeguar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Relating to the Importation of Goods (2003) is Russia's key anti-dumping legislation. Its provisions largely reiterate WTO's anti-dumping disciplines and include some new elements such as a public interest and anti-monopoly clause.

This study examin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of Russia's anti-dumping law and practice, compares them with WTO rules and explores some implications for Korea from both private and public perspectives.

■ 연구보고서

-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권기수 · 이철원 · 오태현 · 김진오 · 이순철
-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해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07-13 페루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07-16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 08-01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
정지원 · 박혜리
-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09-0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 Yushi Yoshida
- 09-02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Vadis?” / Norio Komuro
- 09-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 Kye Woo Lee
- 08-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 Kye Woo Lee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 08-02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 Woosik Moon and Yeongseop Rhee
- 08-03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 Woosik Moon
- 08-04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BUI Truong Giang
- 08-01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 금융, 자동차, 전기전자 /
이재호 · 정재완 · 이성훈
- 08-02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바이오연료, TV방송,
프랜차이즈 / 배희연 · 정재완 · 박병국
- 08-03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석유, IT, 건축자재, 의약 /
황지영 · 이철원 · 최진형
- 08-04 UAE의 주요 산업 분석: 건설, 정보통신, 관광, 금융 /
박철형 · 이영희
- 08-05 헝가리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IT, 금융, 제약 /
이철원 · 김용성
- 08-06 칠레의 주요 산업 분석: 농업, 수산업, 광업, IT /
김진오 · 성기주
- 08-07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 · 가스, 통신, 건설, 전력 /
박영호 · 허윤선 · 심자용
-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 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인 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 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Russia's Anti-dumping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Sherzod Shadikhodjaev and Joo young Yang

러시아는 현재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을 검토중에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대한민국 무역규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제적·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러 BEPA 협상의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할 요인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2154-0
978-89-322-2112-0(세트)

발간등록번호

11-B090003-001232-14

정가 5,000원